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12. 22

산업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發議日字 : 2001. 11. 15

나. 發 議 者 : 임덕재 의원 외 10인

다. 回附日字 : 2001. 11. 20

라. 上程日字 : 2001. 12. 21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任德宰 議員)

가. 改正理由

o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에관한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대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o 제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신설함.

o 제5조(거리의 환산) 제2호를 삭제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대상시설 및 설치가능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o 개정 조례중 제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신설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충남도내 천안시외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o 개정 조례중 제5조제2호를 삭제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이를 빙자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3 제2호의 규정중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단위면적당 몇호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와 서산시장으로부터 현행조례대로 운영함이 가할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 제5조제2호로 삭제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정서 및 일부 난개발이 우려되나

o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 범위안에서 개정되는 규정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권리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익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ㅇ 제명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서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로 한다.
- ㅇ 제1조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 "숙박시설"을 삽입한다.
- ㅇ 제3조 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신설한다.
- ㅇ 제4조중 괄호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설치 가능지역등"을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가능지역"로 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시설"을 "제3조 각호"로 하며, 제1호 라호 다음에 "마"호를 신설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별첨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o 서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 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제3조(허용대상시설)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허용대상시설)·····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숙박·음식점 등의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제3조각호의····
	·····
	1. 가~라 (개정안과 같음)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거리환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제5조(거리환산)·····
	·····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삭 제>	2.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37호
의결 년월일	2001. . . (제 회)

瑞山市準農林地域안에서의休憩및一般飮食店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제 출 자	임덕재의원외 10인
제출년월일	2001년 11월 15일

瑞山市準農林地域안에서의休憩및 一般飮食店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1. . .
발 의 자 : 임덕재의원외 인

1.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신설
- 제5조(거리의 환산) 제2호를 삭제

3. 참고사항(관련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서산시조례 제 호

瑞山市準農林地域안에서의休憩및 一般飮食店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瑞山市準農林地域안에서의休憩및一般飮食店設置에관한條例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용대상시설)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신 설>	제3조(허용대상시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제5조(거리환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생 략) 2. 제4조의 제2호에 의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경우라 함은 당해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5조(거리환산)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